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

체정 2018.01.26.

4차 개정 2020.11.26.

5차 개정 2021.03.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조의2에 의거 상지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상지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일반교원을 말한다.

② 책임시간이란 교원이 학기당 담당하여야 할 주당 강의시간을 말하며, 학부에서 담당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책임시간) ①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학부장의 기준 학기당 11시간으로 하며, 연간 22시간으로 한다. 단,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임상교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3.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시 계약서상에 책임시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우선한다.

③ 교원의 강의 담당시간은 교내·외 출강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교무위원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책임시간은 주당 6시간을 감면하되** 단과대학장의 책임시간은 주당 3시간을 감면한다. 단, 교무위원이 아닌 보직교원과 총장이 인정하는 교원의 경우 책임시간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02.28., 2021.03.31.)

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였을 때에는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의 책임시간을 적용한다.

⑥ 교원의 정년퇴직 예정일이 속한 학기에는 6시간을 감면하고, 정년퇴직 예정일이 속한 학기의 직전학기에는 3시간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8.07.20.]

⑦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석·박사과정의 전체 강좌(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교과목, 논문연구과목, 선수과목 제외) 중 교수 1인당 강좌별 수강생 5명 이상 강의하였을 경우 연간 최대 3시간(2학점은 2시간)을 감면한다.(신설 2020.11.26)

제4조(책임시간 계산) ① 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도교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성교육 및 취업진로 관련 교과목 시간을 포함한다.

② 학기 중 임용된 보직자의 책임시간은 임용된 학기부터 감면한다.

- ③ 보직자가 학기 중 보직을 면하는 경우 책임시간을 감면하는 기준일은 해당 학기 종료까지로 한다.
- ④ 책임시간 산정에 필요한 강의유형별 강의시간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7.20., 2020.11.26.)
- ⑤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 수업의 강의시간은 책임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⑥ 강좌가 중도 폐강된 때에는 폐강일 전까지 책임시간으로 산정한다.
- ⑦ 2회 연속 동일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 책임시간 면제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항 신설 2019.06.05.)

- 제5조(책임시간의 조정)** 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시간은 연간 22시간으로 하며 학기당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07.20)
- ② 연구비 수주액,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에 대하여 책임시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적용은 책임시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책임시간의 준수)** ① 직전 학년도 책임시간에 미달한 교원은 해당 학년도에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책임시간 미달 교원이 해당 학년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달되었을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책임시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 제7조(위원회)** ① 제6조 제2항의 제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책임시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학생행복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임명직으로 구성하며, 교육연구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9.06.05.)
 - ③ 위원회 임기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중전 규정에 의해 책임시간을 감면 받은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책임시간을 감면받은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학과 통합에 다른 경과조치) 학과 통합으로 인하여 교원이 책임시간을 이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기획예산팀-379, 2018.07.20)

이 규정은 2018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127, 2019.02.28)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296, 2019.06.0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739, 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7항의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 ① 제3조 제7항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② 교원은 연간 개인별 시수를 감안하여 감면을 사용하고, 책임시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기획예산팀-201, 2021.03.31.)

이 규정은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8.07.20., 2020.11.26.)

강의유형별 강의시간 인정기준

유형	강의형태	강의시간 인정기준
이론	전체 계열의 이론 강좌	주별 수업시간수를 그대로 담당시간으로 인정함
실험·실습	전체 계열의 실험·실습 강좌	주별 수업시간수를 그대로 담당시간으로 인정함
실기	예체능 계열의 실기 강좌	주별 수업시간수를 그대로 담당시간으로 인정함
팀티칭	하나의 강좌를 2명 이상의 교원이 팀을 이루어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	해당 강좌의 수업시간 수 범위 내에서 각 교원이 참여한 시간을 담당시간으로 인정함
합반 강좌	2개 이상의 강좌로 개설되었으나 동일 교시에 편성되어 동일한 강사가 동일 시간대에 통합하여 수업하는 강좌	통합하여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담당시간으로 인정하며 각 강좌의 강의시간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분반 강좌	수강정원을 고려하여 동일 교과목을 2개 이상의 강좌로 나누어 수업하는 강좌	주별 수업시간수를 그대로 담당시간으로 인정함
지도교수 방식 강좌	지도교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성교육 및 취업진로 관련 교과목	담당시간으로 인정함
e-러닝강좌	이러닝 강좌 등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강좌	외부지원 콘텐츠(사이버토익)은 1/2 인정하고 자체개발의 경우 1강좌는 100%, 분반 시 1/2 인정함
군휴학이러닝(KCU)강좌	군휴학생 대상 강좌	담당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진행 과목	담당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부기관 지원사업 강좌	외부기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강좌	담당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표2)

책임시간 미달 교원에 대한 제재 조치

□ 연간 책임시간 미달 산출 공식

○ 다음 공식에 의하여 개인별 미달시간을 산출

■ 산출 공식 : (책임시간 × 30주) - (실제 강의시간 × 30주)

□ 미달 시간 수에 따른 제재조치

○ 직전 학년도에 책임시간을 미달하고, 해당 학년도에도 준수하지 못했을 때
- 연구수당을 삭감한다.

(삭감 기준 : 주당 미달시수×30×초과강의료 기준금액)

- 90시간(주당 3시간) 미만 : 주의

- 90시간(주당 3시간) 이상 : 경고

○ 5년 단위/5년 초과처분은 순차적으로 소멸제 적용

- 연속하여 주의 2회, 통산 3회 주의 조치 시 : 경고

- 연속하여 경고 2회, 통산 3회 경고 조치 시 : 징계심의 회부

□ 적용방법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달사유에 대하여는 사유서를 제출 받아 책임시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함